진로탐색학점제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성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진로탐색학점제는 학생이 학기 단위로 자기 주도적 진로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한 활동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3조 (운영) ①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며 다음 각호의 운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학기별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공지
3. 진로탐색학점제 참가 신청 및 활동계획서 신청 및 접수
4. 진로탐색학점제 대상 학생 선발
5. 진로탐색학점제 과목 수강 신청
6. 계획에 따른 진로탐색학점제 수행 및 지도교수 점검
7. 진로탐색학점제 수행 점검(활동보고서) 및 관리(중간평가 포함)
8. 수강 학생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학점인정

제4조 (위원회) ①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일자리개발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기를 둘 수 있다.

④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탐색학점제 기본 정책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진로탐색학점제 신청 자격 및 활동계획서 심의·승인에 관한 사항
3. 진로탐색학점제 결과물 평가 및 성적 부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유형 및 정의) 진로탐색학점제의 운영 유형 및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설계유형' 이란 진로탐색학점제를 신청하기 위해 학생(팀)이 직접 설계하는 유형으로 문제해결형, 산학연계형, 창·제작형, 창업연계형, 자율형으로 세분화하며,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별표1과 같다.
2. '학부(과)제시유형' 이란 진로탐색학점제를 신청하기 위해 학부(과)나 학과 전임교원이 정규학기 동안 운영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학생(팀)이 참여하는 유형을 말한다.

제6조 (교육과정 및 취득학점) ① 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은 각 학부(과) 교육과정에 반드시 전공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며 교과목 개설은 편성된 경우에 한한다.

② 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명 및 취득학점은 아래와 같다.

학기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의무활동(학기)	취득학점	성적평가
1	전공	전선	진로탐색(1)	90시간	3	P/F
2	전공	전선	진로탐색(2)	90시간	3	P/F

③ 진로탐색학점제는 정규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학기당 15주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④ 진로탐색학점제를 통한 학점 취득은 학기당 1회, 재학 중 최대 2회,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교수) ① 진로탐색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참가 학생별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참여 학생 학부(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로탐색학점제 학생 참여 신청서 승인
2. 진로탐색 활동 및 학점 부여 적정 여부 판단
3. 학생 상담 및 지도
4. 보고서 및 학생 진로 탐색 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위원회에 학생활동에 대한 성적평가 인정 요청

④ 지도교수별 학생 지도는 최대 2팀으로 제한하며 3학점 지도 시 1시수를 인정한다.

제8조 (신청자격 및 절차) ① 진로탐색학점제 신청은 2학기 이상 6학기 이하 이수한 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②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진로탐색학점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진로탐색학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참가 신청 및 활동계획서를 해당 기간에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로탐색학점에 필요한 제 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 (승인) ① 위원회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신청 과제의 자기 주도성, 체계성, 구체성 및 활동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최종 승인한다.

② 센터는 최종 승인된 프로젝트를 신청 학부(과) 및 학생에게 통보한다.

제10조 (교과목 개설 및 수강) ①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교과목은 해당 학부(과)에서 개설한다.

② 최종 프로젝트 참여를 승인받은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진로탐색 교과목은 연간 수강 신청 최대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학점인정 절차) ① 진로탐색학점제의 학점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는 주차별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활동 내용 및 결과물 등을 종합평가하여 성적을 부여하고 학부(과)장 확인을 받아 센터로 제출한다.
2. 위원회는 제출된 결과물을 심의하고 지도교수가 부여한 성적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학점인정을 승인한다.
3. 센터는 최종 승인된 학점을 해당 학부(과)에 통보하고 학부(과)에서 최종 성적을 부여한다.

제12조 (성적) 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총점 70점 이상은 P(Pass), 70점 미만은 F(Fail)로 처리한다.

제13조 (참가자의 의무) 참가자는 자신의 성공적인 진로탐색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활한 진로탐색 학점 이수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 학과(전공)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번	유형		특징
1	학생설계 유형	문제해결형	지역, 국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 및 제안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유형
2		산학연계형	전공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를 심화하거나 전공 분야 산업계의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산업체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유형
3		창·제작형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창작·무대공연, 시각예술 관련 전시·디자인, 영상·영화·애니메이션·웹툰 제작, 문예 창작, 이와 관련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유형
4		창업연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연결하는 활동 유형
5		자율형	탐구하고자 하는 과제의 목적이나 내용, 방법, 산출물이 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주제 등 제반 사항을 자유롭게 설계하여 수행하는 유형
6	학부(과)제시 유형		진로탐색학점제를 신청하기 위해 학부(과)나 학과 전임교원이 정규학기 동안 운영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유형